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소에너지,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).
-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(안 제7조제5항 신설).
-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,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).
- 수소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에 관한 장(章)을 신설하고,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(안 제25조의9 신설).
-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

고,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·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의18 신설 등).

-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(안 제57조제1호의4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안 제7조의3제1항제4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수소에너지 연구·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2025. 1. 31. 위 법률 제14조의2는 삭제되었고, 해당 내용은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¹⁾으로

1)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“인정 기준”이라 한다)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, 소재지,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727호<2025. 1. 31.> 부칙 제4조(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.

이관되었으므로, 안 제7조의3제1항제4호의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<신 설>	제7조의3(사업의 실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7조의3(사업의 실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생략) 4.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

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